



노인을 위한 정보

노인 학대와 방임 및 형사사법제도

이것은 노인을 위한 일련의 안내지 중 하나입니다. 다른 안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학대와 방임 - 그것은 범죄인가?
- 경찰에 범죄 신고하기 및 신고 시 취해지는 조치
- 성인후견법 제3부에 의한 학대와 방임 신고하기
- 법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 타인에게 자신의 일 관리에 도움이 되는 권한 부여하기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 관련 상황이 점점 더 많이 경찰에 신고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지역사회 경찰과 주민이 위험에 처한 노인을 보호하려고 함께 협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법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찰의 역할

경찰은 다음을 수사합니다.

- 안전 문제와 관련한 신고. 특히 위험에 처한 사람이 스스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신고.
- 범죄 관련 신고
- 경찰이 범행을 의심하게끔 하는 수상한 활동

경찰 수사에 대개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찰 수사에 대개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고 접수를 위한 피해자 및 증인 면담
- 증거 수집
- 피해자 및 증인 진술서 입수
- 법의학적 증거 수집 의뢰(법의학적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됩니다)
- 현장을 있는 그대로 유지(현장 보존이라고도 합니다)
- 용의자 면담 및 일부 경우 용의자 체포

경찰은 언제 체포하나요?

범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면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이러한 체포는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재범을 막거나,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범죄자가 체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자가 체포되면 경찰은

- 1)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인물이거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어지는 경우 가두어둡니다. 검사는 “이유제시 심리”를 행하여 예비 심문이나 심리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을 석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또는

2) 석방에 조건을 달아 풀어줍니다.

경찰은 검사를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범행이 있었다고 믿으면 경찰은 검사를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소를 제안합니다.

이 보고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Report to Crown Counsel, RTCC)라고 합니다. 때로는 혐의 “내역”이라고도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경찰 수사로 알게 된 정보 또는 사실과 혐의 및 체포의 정황입니다.

검사의 역할

검사는 경찰 보고서를 보고 혐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내리는 이 결정은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검사는 혐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도 감안합니다. 검사는 공익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사건의 정황과 지역사회 우려사항을 고려합니다.

기소 결정을 내릴 때, 검사는 다음 사항도 검토합니다.

- 기소 내용의 심각성
- 범죄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 무기 사용 여부
- 범죄 피해자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전과 여부
- 피고인이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해당 범행이 피해자의 인종, 출신,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정치적 견해, 성적 성향 등에 기인하는 것이었는지 여부
-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제 나이 또는 정신 연령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 혐의자가 법원명령하에 있을 때 해당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 해당 범죄가 심각한 것은 아니라도 범행이 이루어진 지역에 만연된 범죄인지 여부

기소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혐의 내용을 밝히는 “기소장”이 작성됩니다.

치안판사는 경찰관에게 “기소장의 사실에 대하여 선서”하게 합니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형사법정에서 해당 혐의 내용을 다룰 변호사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혐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압박할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기소합니다.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의 역할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는 범죄 피해자에게 사법제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보, 실질적 원조,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경찰 및 지역사회와 협력합니다.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는 피해자가 경찰과 검사로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얻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과 우려사항에 관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기반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Community-Based Victim Service Programs)** – 이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하여 제공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전문으로 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원주민이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돕는 일을 전문으로 합니다.
- **경찰 기반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Police-Based Victim Service Programs)** – 이 프로그램은 대개 BC 전역의 수많은 지역사회 내 파출소에 있으며, 재산에 대한 범죄이든 대인 범죄이든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함께 협력하고, 범죄가 경찰에 신고된 시점부터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피해자링크(VictimLINK)** – 주정부의 무료전화 서비스로,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정보 및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위기상황 지원을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1-800-563-0808로 하루 24시간 주 7일 연락하십시오. 이것은 다국어, TTY 서비스입니다. 청각장애인은 TTY 전화 604-875-08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배상 또는 범죄로 빼앗긴 재산 되찾기

형법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범죄로 획득한 모든 재산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경우, 배상은 보호관찰 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절도가 있었고 손실 금액에 대한 의문이나 혼동 또는 가치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범죄 피해자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재정적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Crime Victim Assistance Program)**에 604-660-3888 또는 무료전화 1-866-660-3888로 문의하십시오.

민사소송을 통하여서도 학대자로부터 배상이나 물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법률상담을 받으십시오.

불만사항 또는 이의제기

경찰에 대하여

브리티시컬럼비아에는 두 종류의 주요 경찰력이 있습니다. 연방경찰인 RCMP와 시 경찰입니다. 일부 지역사회에는 원주민 경찰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찰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거나 우려되시면, 먼저 담당 경관이나 상급자와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오해나 와전이 이 선에서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불만사항이 시 경찰이나 원주민 경찰에 관한 것이라면 경찰불만감찰관(Police Complaint Commissioner)에게 연락하십시오. 밴쿠버에서는 (604) 660-2385로 전화하십시오. 불만사항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C주 경찰에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If You Have a Complaint Against the Police in BC)**라는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연방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요원에 대하여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연방경찰에 대한 불만사항 처리 위원회’(Commission for Public Complaints Against the RCMP)에 연락하십시오. 무료전화: 1-800-665-6878. 자세한 내용은 *연방경찰에 대한 불만사항 처리 위원회(The Commission for Public Complaints Against the RCMP)*라는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검사에 대하여

기소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경우, **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에 의하여 검사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없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노인을 대신하여 이런 요청을 해도 됩니다.

법과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로우어 메인랜드에 사시는 분은 **B.C. CEAS**에 **604-437-1940**으로 연락하십시오. 주 내 그 이외 지역에서는 무료전화 **1-866-437-1940**을 이용하십시오.

이 안내지는 프레이저보건공단(Fraser Health Authority)의 써리보건보조금(Surrey Health Grant)을 받는 지역사회 재정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